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. 10. 15.(수)

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추진

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('25.10.15.~11.24.)
- 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및 영업자 단기 휴업신고 면제 등 제도 정비
-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불편·부담 해소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**알가공업**에서 갖추어야 하는 **장비·시설**의 **전부 또는 일부**를 **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**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**축산물 위생관리법**」 **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**을 10월 15일 입법예고 했다.

이번 **개정안**은 **축산물 영업 환경변화**를 반영한 **현장 중심**의 **합리적인 제도 개선**으로 **소상공인**의 **불편·부담을 해소**하고 **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**하기 위한 목적이다.

주요 내용은 ①**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**, ②**영업자의 단기 휴업신고 면제**, ③**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·주기 완화**, ④**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 확대** 등이다.

① **알가공업의 제조·가공실**에는 **의무적**으로 **검란기***, **세란기**** 등 **장비·시설**을 **반드시 갖추도록 규정**하고 있어 **영업자**에게 **부담**으로 작용했다.

* 검란기 : 식용란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기계
** 세란기 : 식용란 껍데기의 오염 물질을 세척하는 기계

이에 식약처는 **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**하여 **검란기나 세란기**를 **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** 등에 대해 **관할관청**이 **운영형태**를 **고려**하여 **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**하는 경우 **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**한다.

② 영업자가 **휴업·재개업**을 하려는 경우 **관할관청**에 **신고**하여야 하나, 경영난·인력난 등 영업사정에 따라 **단기 휴업**(1개월 미만)을 하는 경우에는 **신고 의무를 면제**(도축업·집유업 제외*)하여 영업자의 **탄력적인 영업 활동**을 **지원**한다.

* 도축업·집유업 : 영업장 내 검사관 배치, 축산물 수급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(현재 휴업·재개업 신고 5일 전에 하도록 규정)

③ 기존에는 **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이물·성상**의 경우 **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**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**품목 특성, 가공 과정** 등을 **고려**해 **축산물 유형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** 개정한다.

또한, **축산물가공품**에 **사용되는 원료**는 **입고 시점**마다 **이물·성상 검사**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**축산물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***(HACCP)의 **선행요건** 중 **입고검사**와 **중복되는 점**을 고려해 **규정을 정비**함으로써 **영업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**한다.

* 축산물가공업 해썹 의무적용 : 알가공업('17년), 유가공업('18년), 식육가공업('24년)

구분	【현 행】		▶	【개 정】	
	성상·이물	그 외 항목*		성상·이물	그 외 항목*
축산물 가공품	동일 생산단위별 1회 이상	매월 1회 이상		매월 1회 이상 (유형별로 선별하여 고시에 규정)	매월 1회 이상
원료	원료 입고시점마다	-		(삭제)	-

* 유형별 기준·규격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여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고시에 규정

④ **위해 축산물의 회수·폐기 및 위반 사실** 등을 **일간신문**과 **식약처 누리집**에 **공표**하도록 **규정**하고 있으나, **최근 인터넷 매체 뉴스 이용률**이 **증가***함에 따라 **공표 매체**를 **일간신문 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****까지 **확대**하여 **위해 축산물 정보에 대한 접근성**을 높인다.

* 뉴스 매체 이용 비율(순위) : 인터넷·텔레비전 → 인터넷 포털 →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→메신저 서비스 → 숏폼 → SNS →종이신문 → 라디오 등 (출처 : 한국언론진흥재단 '2024 언론 수용자 조사' 결과 발표 보도자료('25.2.))

**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)

식약처는 앞으로도 **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**로 두고 **변화**하는 **사회 환경**을 **반영**하여 **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**하는 등 **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**할 **계획**이다.

자세한 내용은 **국민참여입법센터**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*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**개정안에 대해 의견**이 있는 경우 **2025년 11월 24일까지** 제출할 수 있다.

* 현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서비스 복구 중으로, 법제처 블로그로 열람가능

담당 부서	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성일 (043-719-32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규 (043-719-3259)

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넘어갈 안심기준
APEC 2025 KOREA
10.27.~11.1. 경주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**

○ **알가공업의 시설 설치 면제 기준 확대**(시행규칙 제29조 [별표10])

현 행	개정안
• 알가공업 제조가공실에 검란기·세란기·파란장치(식용란 깨는 과정이 있는 경우)·액란열처리시설(열처리 과정이 있는 경우) 등 의무적 구비	• 검란기·세란기·파란장치·액란열처리시설 등 의무적 구비. 다만 **허가관청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**하는 경우 **시설 전부 또는 일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**

○ **영업자의 단기 휴업 신고 면제**(시행규칙 제32조)

현 행	개정안
• 휴업기간 관계없이 휴업·재개업 신고 의무	• **1개월 미만 휴업** 시 휴업·재개업 **신고의무 면제(도축업·집유업 제외)**

○ **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대상·주기 완화**(시행규칙 제14조제1항 [별표5])

현 행	개정안
• 모든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성상·이물 검사 실시(1회 이상/동일생산단위별)	• 축산물가공품 **유형별 특성**을 **고려**하여 **필요한 경우 성상·이물 검사 항목을 고시**(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」)에 추가(1회 이상/월)
• 모든 축산물가공품 원료에 대하여 성상·이물 검사 실시(입고시점마다)	• 축산물가공품 **원료**의 **성상·이물검사 의무 삭제**

○ **위해축산물 등 공표매체 확대**(시행령 제28조)

현 행	개정안
축산물 회수·폐기, 위반사실 등 공표매체	
•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및 식약처에서 구축·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인터넷 홈페이지	• 현행+**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** 또는 **해당 사업자의 계열사**가 인터넷 신문사업자를 등록하고 발행하는 **인터넷 신문**